

● 제27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6. 12.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7년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1502호(예산안), 제1503호(기금안)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6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6년 11월 14일

II .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 편성 개요

- 2017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5억 3천 5백 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20조 6,227억 4천만원의

0.7%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2016년 예산 대비 115억 2백만원 (8.2%)이 증액된 것임.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6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140,033	151,535	11,502	8.2%

나.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최근 5년간 변동추이

-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1,094억 7천 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2.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413억 7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입 예산 중 국고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가 감소하였다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 9.9% 증가하였음. 상대적 비율은 2013년 57.4%에 이르던 것이 점점 증가하여 2016년 71.1%로 증가하였고, 금번 2017년 예산에서도 다소 증가하여 7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안	증감	증감율
계	113,559 (100%)	126,168 (100%)	157,660 (100%)	140,033 (100%)	151,535 (100%)	11,502	8.2
세외수입	48,371 (42.6%)	48,796 (38.7%)	50,997 (32.3%)	39,912 (28.5%)	41,375 (27.3%)	1,463	3.7
보조금	65,188 (57.4%)	76,311 (60.5%)	105,970 (67.2%)	99,610 (71.1%)	109,471 (72.2%)	9,861	9.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061 (0.8%)	693 (0.4%)	511 (0.4%)	689 (0.5%)	178	34.8

*주) ()괄호 안은 각해년도 예산의 구성비를 말함

- 2017년 세입예산의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는 대신 ‘세외수입’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음.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4.8% 늘어났음.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 시민건강국 소관 2017년 세출예산은 4,182억 7,8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958억 2,200만원 대비 5.7% 증액된 수준임.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7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99,610) 395,822	(×109,471) 418,278	(×9,861) 22,456	5.7

나. 최근 5년간 세출 예산 변동추이

-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29조 6,524억 원)의 1.4%에 해당하며, 이는 2016년의 세출예산 구성비와 같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시민건강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시민건강국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대비율(%)	전년대비증감율(%)
2013	24,355,835	308,561	1.3	9.3
2014	25,522,763	321,662	1.3	4.2
2015	26,411,590	427,667	1.6	33.0
2016	27,503,758	395,822	1.4	-7.4
2017	29,652,478	418,278	1.4	5.7

※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서울시 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3년 3,085억 6,100만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4,182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여, 4년 사이에 1,09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3년 대비 1.35배가 증가한 것이며, 동 기간 동안 서울시 총예산 규모가 1.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시민건강국 예산규모를 서울시 총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살펴보면, 2013년 1.3%였던 것이 2017년에는 1.4%로 소폭 증가하였음.

〈2017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율 (%)
총계	308,561 (100%)	321,662 (100%)	427,667 (100%)	395,822 (100%)	418,278 (100%)	22,456	5.7
행정 운영경비	6,973 (2.3%)	7,337 (2.3%)	7,307 (1.7%)	7,546 (1.9%)	7,712 (1.8%)	167	2.2
재무활동	4,025 (1.3%)	872 (0.3%)	1,053 (0.2%)	850 (0.2%)	1,372 (0.3%)	522	61.4
사업비	297,564 (96.4%)	313,452 (97.4%)	419,306 (98.0%)	387,426 (97.9%)	409,194 (97.8%)	21,768	5.6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시민건강국 세출구조는 연례적으로 96.4%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증감사유

-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도 메르스 추경 이전까지 소폭 증가해 오다가, 2015년에 메르스 추경으로 인해 큰 폭 증가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나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금번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5.7% 증가하였음.
- 2015년 메르스 추경의 결과로 2016년 대부분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다시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라.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7년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이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의 33.4%(1,395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생활보건과 28.6%(1,197억원), 건강증진과 23.3%(975억원), 어린이병원 3.3%(136억원), 보건환경연구원 3%(141억원), 서북병원 3%(127억원), 식품안전과 2.3%(95억원), 은평병원 1.6%(68억원), 동물보호과 1.1%(47억원) 순으로 나타남.
-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생활보건과, 건강증진과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예산이 운용됨을 보여줌.

〈시민건강국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13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총계	308,561	321,662	427,667	395,822	418,278	22,456	5.7
	(100%)	(100%)	(100%)	(100%)	(100%)		
보건의료 정책과	138,632	116,449	167,878	143,179	139,529	△3,650	-2.5
	(44.9%)	(36.2%)	(39.3%)	(36.2%)	(33.4%)		
건강 증진과	64,599	69,017	82,609	85,633	97,452	11,819	13.8
	(20.9%)	(21.5%)	(19.3%)	(21.6%)	(23.3%)		
식품 안전과	3,270	6,434	7,245	8,707	9,547	840	9.6
	(1.1%)	(2.0%)	(1.7%)	(2.2%)	(2.3%)		
생활 보건과	55,954	78,581	112,275	104,814	119,748	14,935	14.2
	(18.1%)	(24.4%)	(26.3%)	(26.5%)	(28.6%)		
동물 보호과	5,303	1,860	2,534	3,180	4,719	1,539	48.4
	(1.7%)	(0.6%)	(0.6%)	(0.8%)	(1.1%)		
보건환경연 구원	14,022	13,875	18,767	14,839	14,081	△757	-5.1
	(5%)	(4%)	(4%)	(4%)	(3%)		
어린이 병원	7,141	16,305	15,429	15,499	13,645	△1,854	-12.0
	(2.3%)	(5.1%)	(3.6%)	(3.9%)	(3.3%)		
유년 병원	8,230	7,659	7,545	7,027	6,836	△191	-2.7
	(2.7%)	(2.4%)	(1.8%)	(1.8%)	(1.6%)		
서북 병원	11,409	11,482	13,384	12,945	12,722	△224	-1.7
	(3.7%)	(3.6%)	(3.1%)	(3.3%)	(3.0%)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각 과별, 주요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민건강국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2017년도 예산안	16년 사업수	17년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5억 이상)
			총계	증	감	동일	
전체	409,194	179	188	99	63	26	
보건 의료 정책과	138,485	57	59	29	2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3,636백만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2,939백만원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 661백만원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711백만원 -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 사업(주민참여) 1,404백만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 △900백만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844백만원 -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운영 △1,312백만원 - 보건지소 확충 지원 △1,985백만원 -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 △1,758백만원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1,302백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74백만원
건강 증진과	97,389	30	25	15	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897백만원 -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885백만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908백만원 - 모자보건사업 6,249백만원 - 저소득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588백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77백만원 -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5,780백만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565백만원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521백만원

식품 안전과	8,959	15	20	13	4	3	○ 해당없음
생활 보건과	119,392	33	32	16	10	6	○증액 - 국가 암검진 3,063백만원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878백만원 - 결핵 관리 2,018백만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9,120백만원
동물 보호 과	4,687	9	15	9	3	3	○증액 - 동물복지지원시설 조성사업 1,150백만원 -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500백만원
보건 환경 연구원	12,059	24	25	11	10	4	○감액 - 청사시설 유지관리 △710백만원
어린이 병원	12,401	4	5	3	2	0	○증액 -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587백만원 -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 성 사업 903백만원 ○감액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3,150백만원
은평 병원	5,607	4	4	1	3	0	○ 해당없음
서북 병원	10,215	3	3	2	1	0	○감액 - 서북병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665백만원

※ 기본경비, 재무활동비는 단위사업수에서 제외

마.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17회계연도 기준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간의 예산 비율은 56.3 : 43.7로 나타남.
 - 다시 말해, 시민건강국 사업 예산의 56% 가량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약 44%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					
부서	예산			사업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액	2016년	2017년
보건의료 정책과	39,547	17,150	△22,397	15	13
건강증진과	69,573	76,748	7,175	15	13
식품안전과	6,581	6,951	370	9	10
생활보건과	102,567	117,069	14,502	18	18
동물보호과	511	1,681	1,170	1	2
보건환경 연구원	6,753	3,928	△2,825	14	15
어린이병원	-	-	-	-	-
은평병원	-	-	-	-	-
서북병원	6,837	7,034	197	1	1
소계	232,369 (60.0%)	230,561 (56.3%)	△1,808	73	72
순수 시비 사업					
사업명	예산			사업수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액	2016년	2017년
보건의료 정책과	102,836	21,336	18,500	42	46
건강증진과	15,986	20,641	4,655	14	12
식품안전과	1,700	2,008	308	6	10
생활보건과	1,989	2,322	333	14	14
동물보호과	2,639	3,006	367	8	13
보건환경 연구원	6,105	8,131	2,026	10	10
어린이병원	14,299	12,401	△1,898	4	5
은평병원	5,826	5,607	△219	4	4
서북병원	3,676	3,181	△495	2	2
소계	163,276 (39.6%)	153,285 (39.8%)	23,577	104	116
총계	387,425 (100.0%)	409,194 (100.0%)	21,769	177	188

- * 시비는 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비 제외된 예산임
-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한편,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보면, 2017년 기준 총 188개 사업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72개이

고, 순수 시비사업은 116개로 나타났음.

- 이는 전년과 비교해볼 때, 국비보조 사업 수는 1개 줄었으며, 순수 시비 사업의 경우 12개가 늘어난 것임.

바.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16년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7개임.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으로, 시민건강국 총예산의 21.7%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이 5.2%,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사업이 4.6%,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이 4.0%,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사업이 4.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사업이 3.5%,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2.9%를 차지하고 있음.
 - 상기 7가지의 사업은 시민건강국 총 예산 대비 45.9%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비 매칭 법정사업과 규모가 큰 시립병원 운영보조 예산이며,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에 예산액이 크게 확대되었음.

〈10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번	부서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증액	국 예산 대비율
1	생활보건과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79,729	88,849	9,120	21.7
2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8,208	16,364	△1,844	4.0
3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	17,941	18,602	661	4.6
4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사업	15,100	21,349	6,249	5.2
5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4,192	14,413	222	3.5
6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11,897	11,740	△157	2.9
7	건강증진과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10,544	16,325	5,780	4.0 (누계 45.9)

사. 신규사업 (주민참여예산 제외)

1) 2017년 신규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7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총 예산규모는 110억 81만원임.
- 신규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신규사업 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합계			11,000,810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3,636,000	○ 위치(대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 사업내용 :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	150,000	○ 위치(대상) :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 사업내용 : 보라매병원내 감염전문응급실 음압격리병상, 감염전문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 전문센터 설치
3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특별시립병원 시스템 운영	22,540	○ 위치(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사업내용 : 시립병원 보조금 예산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4	보건의료 정책과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285,000	○ 위치(대상) : 시립병원 2개소 ○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5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2,939,273	○ 공공보건 의료정책의 싱크탱크, 공공보건 의료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및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플랫폼, 시립병원 관리 운영 혁신의 전문적 지원 ○ 조직 및 인력 : 4부35명 ○ 총출연금(5년간) : 249억원 ○ 기능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6	건강 증진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300,000	○ 사업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 : 서울시 등록 장애인 392,068명 ○ 사업내용 : -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 거버넌스 협치 모델 개발 - 서울시 장애인건강권 기술지원체계 구축 및 기초실태조사 - 수혜자 중심의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7	식품 안전과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138,000	○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상지역 선정 및 거리조성
8	식품 안전과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150,000	○ 민관협의체 식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활성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의 먹거리실태(소비,외식 등)현황조사, 먹거리 의제사업 실천, 시민 홍보 및 토론회 등
9	식품 안전과	식품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	73,600	○ 식품 HACCP 인증을 위해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사전 컨설팅비를 지원함으로써 HACCP인증 활성화
10	생활 보건과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 개선사업	28,750	○ 노후화된 시설물정비 및 자외선 살균장치 설치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제공
11	생활 보건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50,000	○ 생활 환경 유해화학 물질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12	생활 보건과	노숙인 결핵환자 지원 협의체 구성	21,640	○ 노숙인결핵환자사업을공공,민간단체들이협의체구성을통해기존사업의효과증대시키고노숙인결핵치료의사각지역을최소화하고자함.
13	동물 보호과	동물복지 지원시설 조성사업	1,150,000	○ 도입배경 :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 사업개요 - 기간 : '17.1~12 - 내용 : 시설 설계 및 공사 - 기능 : 위급동물구조, 사육 포기동물 인수, 교육, 홍보 등
14	동물 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 (동물보건소) 조성 및 운영	500,000	○ 도입배경 : 재개발 예정지역의 동물이 유기되어 들개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 사업개요 - 중성화센터 조성 1개소 - 반려견 중성화 1200두 - 동물보호 캠페인 등
15	보건환경 연구원	의약품 안전성 검사	252,830	○ 의약품 및 화장품의 규격 및 유해성분 검사로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시민에게 공급 ○ 전문의약품, 최초 및 위탁의약품 정밀검사 ○ 유통화장품 규격 및 안전성 검사 ○ 시민 다소비 사용품목 기획 검사
16	어린이 병원	어린이병원 석축보강공사 및 본관동 공간재구성 사업	903,177	○ 위치(대상): 서울 서초구 헌릉로 260 어린이병원 - 석축보강 : 노후석축(길이50m, 높이3.2m) - 본관동 공간 재구성 규모 : 2,129㎡ ○ 사업내용 - 기존 노후석축 보강공사 - 발달센터 증축공사완료(2017.5월)에 따른 본관동이 전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재배치 등 재구성사업

*상기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한 것임

아. 주민참여예산

1) 주민참여예산 현황

-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804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499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시민건강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16개 사업에서 총 21억 3,705만원이 편성됨.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소관부서의견
총계			2,137,049		
1	보건의료 정책과	잠타 건강나눔지원센터 시설 보완	40,000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25길 7 ○ 규 모 : 81.53㎡ ○ 사업내용 : 건강나눔지원센터 시설정비 및 교육(회의)용 장비와 집기구매 등	적정
2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사업	1,403,574	○ 위 치 : 16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자기돌봄·정신건강증진·심리상담·우울증검사 및 강좌·생애주기별 생명존중 프로그램 등	적정 4, 부적정 20 24개 신청사업을 1개의 부사업으로 편성함
3	건강 증진과	몸맘 건강종합세트	85,000	○ 위 치 : 성북구 ○ 사업내용 : 개인맞춤형 건강체크 및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실천 관리	일부적정
4		어르신 위험 free! 어르신 안심하우스	100,000	○ 위 치 : 서초구 ○ 사업내용 : 치매환자에 최적화된 안심하우스 체험존 설치로 체험과 교육 실시	적정
5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6,000	○ 위 치 : 노원구(월계3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지역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 인지건강 활동	적정
6		보건소 유축기 구입 및 대여	10,000	○ 위 치 : 광진구보건소 ○ 사업내용 : 보건소 유축기 추가 구입(50대) 및 대여 활성화	적정
7	식품 안전과	어린이집 공급 식재료 방사능 검사	30,000	○ 위 치 : 양천구청 ○ 규 모 : 150건 방사능 검사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식재료 방사능 검사	적정
8		중장년 건강밥상 꾸리기	5,000	○ 위 치 : 중랑구청 등 ○ 규 모 : 중랑구 퇴직한 50대 이후 남성 40명 ○ 사업내용 : 건강한 식생활 체험프로그램 6주 과정, 2회 운영	부적정
9		어린이 1830 손씻기 교육실시	20,000	○ 위 치 : 영등포구 초등학교 전체 ○ 규 모 : 23개교 ○ 사업내용 : 올바른 손씻기 교육	적정
10	생활	깨끗한 화장실을 원해요	40,000	○ 위 치 : 동대문구 왕산로 41길	적정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소관부서 의견
		-청량리 먹자골목		○ 규모 : 재래식 간이화장실 1개소 ○ 사업내용 : 재래식 간이 화장실 철거 및 수세식 간이 화장실 설치	
11	보건과	신당 광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40,000	○ 위치 : 중구 다산로33다길 25, 중구 마른내로 16 ○ 규모 : 사업내용 참조 ○ 사업내용 : 남·여화장실 구분 설치, 안심비상벨 및 출입구의 방범용 CCTV 설치 등	적정
12		해충 퇴치기 설치	50,000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 상류 홍제교~포방교 구간 ○ 규모 : 해충퇴치기 25대 설치 ○ 사업내용 : 주민 이용이 많은 홍제천 상류 해충퇴치기 25대 설치	적정
13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100,000	○ 장소 : 중랑 봉수대 공원 ○ 규모 : 1,500㎡ ○ 내용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적정
14	동물 보호과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사랑 축제	4,000	○ 장소 : 서초 양재공원 ○ 일시 : '17. 9월중 ○ 내용 : 반려동물 축제	적정
15		반려동물 안심보험	50,000	○ 대상 : 차상위 반려견 ○ 규모 : 500마리 ○ 내용 : 의료보험료 지원	부적정
16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	53,475	○ 대상 : 구청, 주민센터 등 ○ 규모 : 40개소 ○ 내용 : 쉼터 등 지원	적정

2)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편성 추이

- 주민참여예산은 2013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금번 2017년 예산은 5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시행 첫해의 총 사업수는 3개였고, 2015년에는 13개로 늘었으며, 2016년에는 12개로 1개 사업이 줄었으며, 금번 2017년 예산안에는 16개로 전년에 비해 4개 사업이 늘었음.
- 반면에,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동 기간 동안 3억 4,500만원, 1억 4,000만원, 8억 2,900만원, 4억 9,700만원으로 각각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번 2017년 예산안에는 21억 3,705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시민건강국과 관련한 다양한 예산 규모의 사업들이 시민에 의해 제안되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부서별 현황으로 볼 때는, 건강증진과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이 2015년까지는 50%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6년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사업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도 예산안에는 10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또한 동물보호과 소관의 주민참여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4개 사업 2억 7백만원이 편성됨.

〈최근 5년간 부서별 참여예산 사업 및 예산 규모〉

(단위: 건, 백만원)

부서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총 계	3	345	4	140	13	829	12	497	16	2,137
보건의료정책과	1	45	1	50	1	70	4	132	2	1,444
건강증진과	1	200	2	40	6	284	4	245	4	201
식품안전과	-	-	-	-	-	-	1	45	3	55
생활보건과	1	100	1	50	6	475	3	75	3	230
동물보호과	-	-	-	-	-	-	-	-	4	207

- 최근 몇 년간의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자치구	2014년		2015년		2016		2017 예산안	
종로구					1(생활)	15		
중구							2(보건),1(생활)	290
용산구								
성동구							1(보건)	92
광진구	1(건강)	20	1(생활)	100	1(식품)	45		
동대문구					1(생활)	40	2(보건),1(생활)	102

자치구	2014년		2015년		2016		2017 예산안	
중랑구							1(보건),1(동물)	200
성북구			1(생활)	40			2(보건),1(건강)	196
강북구			1(보건)	70				
도봉구			1(생활)	65			2(보건)	30
노원구			1(건강)	100	1(보건),1(건강)	91	2(보건),1(건강)	151
은평구								
서대문구							2(보건),1(생활)	148
마포구							1(보건)	200
양천구	1(생활)	50					1(보건),1(식품)	81
강서구					1(보건)	22		
구로구							1(보건)	40
금천구					1(보건)	40	1(보건)	30
영등포구							1(식품)	20
동작구			1(건강),1(생활)	218	1(건강)	54		
관악구			1(생활)	82	1(생활)	20	2(보건)	115
서초구							1(보건),1(건강),1(동물)	134
강남구							2(동물)	103
송파구					1(보건)	20		
강동구	1(보건)	50	1(건강),1(생활)	15	1(건강)	100		
서울시	1(건강)	20	3(건강)	139	1(건강)	50	4(보건),1(건강),1(식품)	205

3) 2017년 주민참여예산의 전반적 특징 및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① 감정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검사, 상담,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나 ② 화장실이나 보건소 등의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예산, ③ 반려동물 관련 사업비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금번 2017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을 한 바 있음.
- 동일사업의 중복성 문제나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금번 예산에도 동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각 사업별 소관부서의 검토 의견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총 16건 가운데 ‘적정’ 12건, ‘일부적정’ 2건, ‘부적정’ 2건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 중 ‘일부적정’과 ‘부적정’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기존 시행중인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타당성이 의문시됨.

< 주민참여예산 소관부서 검토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사업비	
1	보건의료 정책과	나도 우울증? 이젠 숨지 말고 치료하자	○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고위험 대상자에 적절한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부 적 정	50
		다함께 쓰담 쓰담, 촌(村)화만사성	○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위한 프로그램은 타과 소관으로 사료되며, 취약계층의 정신건강문제 치료 및 예방은 각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으로 예산 지원됨.	부 적 정	92
		도봉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상담활동가 재능 봉사에 도전)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지원되고 있음	부 적 정	10
		독거 어르신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예산 기 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함	부 적 정	50
		동마강 회복 실천운동 -	○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로 고	부	50

연번	부서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사업비	
		동대문구 마음편한 건강도시 회복 실천운동	통반는 사람들,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기시행중인 프로그램과 중복 및 사업의 취지가 일맥상통하다고 판단됨. 또한 제안의견은 사업위치가 동대문구에 한정되어 있지만, 보건소에서 기시행중인 프로그램은 전 지역의 서울시민을 다 아우를 수 있음	적정	
		동행! 추진운동 - 동대문구민 행복하게 살기 추진운동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예산 기 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지원되고 있음. 지원된 예산으로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자살예방사업 시행되고 있음	부적정	35
		등산과 합창으로 우울증을 날려버리세요!! 함께 어울리는 우울증 예방 행복 프로그램	○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범위내에서 선택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이 가능함.	부적정	20
		마음이 행복한 건강한 일터	○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되고,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함. ○ 키오스크 구매 및 설치는 시급성이 떨어짐	부적정	100
		마음이음지킴이 동아리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예산 기 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지원되고 있음. 지원된 예산으로 자치구별 자살예방지킴이 양성하여 자살예방 지킴이의 날 등을 운영중이며 지역특성에 맞게 자살예방사업 시행되고 있음	부적정	30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엄마가 행복해야 가정 행복해요!	○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택적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이 가능함.	부적정	50
		생애주기별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예산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기 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 지원되고 있음. 생애주기별 및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자살예방사업 시행되고 있음.	부적정	30
		신바람 내 인생~「어두운 회색 NO, 영롱한 실버 YES」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예산 기 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지원되고 있음. 지원된 예산으로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자살예방사업으로 우울증 스크리닝 시행되고 있음	부적정	60
		아동,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 2015년 11월부터 생명문화버스 라는 사업명으로 서울시에서 기시행중임.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서울시내 초중고교로 생명문화버스가 직접 찾아가 생명존중에 대한 콘텐츠를 관람, 직접체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가 직접상담해 주는 등의 업무를 진행중임.	부적정	48
		우리동네 찾아가는 마음건강 Navigator	○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되고, 지원된 예산범위내에서 활용 가능함. ○ 성북구는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상담 활동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 시행중.	부적정	100

연번	부서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사업비
		우울감 낮추고, 정신건강 올리고!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상설 프로그램)	○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우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부적정 100
		자살시도자 희망KIT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예산 기 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지원되고 있음. 지원된 예산으로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자살예방사업 시행되고 있음	부적정 30
		정신장애인 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신장애인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사업	○ 정신보건법 제4조의2(실태조사)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 차원의 실태조사 계획 및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 개 지역(양천구)만 조사실시에 따른 향후 중복의 우려가 있음. ○ 사업대상의 특성상 저소득층 중심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추후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함.	부적정 51
		정신장애인들이 만드는 마을 라디오 제작 프로젝트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79억 예산편성되어 자치구별 예산 지원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정신보건사업 시행중임	부적정 200
		학생들의 마음을 튼튼하게, 마음 건강학교 만들기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함.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마음건강학교', '도담교실', '희망의토닥임'을 통해 학생,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부적정 100
		행복이 피어나는 집	○ 2015년부터 일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평가, 상담을 심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중이며, 2016년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임. 제안 내용은 현재 '심리지원센터' 추진내용과 매우 유사하여 중복적인 사업으로 여겨짐.	부적정 26
2	건강 증진과	몸맘건강종합세트 (나만의 건강법 찾기)	○ 해당사업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예방, 정신건강, 금연, 절주, 아토피 예방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신체활동 및 정신 건강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사업 운영 * 2017년 보건소 시민건강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원스톱 건강증진서비스 체계 구축 예정 - 예산의 쓰임에 있어 우선순위가 다소 밀릴 수 있으나 사업제안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잘 참고하여 부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조건부 (일부) 적정 85
3	식품 안전과	'아빠 식탁'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밥상꾸리기	○ 2013년부터 나트륨섭취 저감화 종합대책 2020을 수립하고, 대상별로 나트륨 저감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음 - 시범적으로 1회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부적정 5
4	동물 보호과	반려동물 안심보험 사업	○ 민간에서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공공에서의 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부적정 50

자. 세부 사업별 검토 의견

1) 노숙인 결핵환자 지원 협의체 구성(신규) : 설계 부실한 협치예산 신중한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협치서울 의제사업”으로 노숙인 결핵 환자 사업을 진행 중인 공공, 민간단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노숙인 결핵 치료의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2,164만원이 100% 시비로 편성되었음.

〈노숙인 결핵환자 지원 협의체 구성〉

(단위: 천원)

구 분	2015결산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	-	21,640	21,640
민간경상사업보조	-	-	21,640	21,640

- 동 사업의 예산사업설명서에는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사업 추진경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협치서울 의제사업”은 일명 협치예산으로 협치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20호, `15.11.5)를 근거로 서울시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시문제를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시민건강국에 편성된 협치예산은 5건의 사업에 걸쳐 총 14억 664

만원으로 전체 100억원인 서울시 협치예산의 약 15%에 해당함.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도입배경 및 사업개요
1	보건의료정책과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285,000	°위치(대상) : 시립병원 2개소 °사업기간 : 2017.01.~2017.12.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
2	식품안전과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150,000	민관협의체 식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활성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시민의 먹거리실태(소비, 외식 등)현황조사, 먹거리 의제사업 실천, 시민 홍보 및 토론회 등
3	생활보건과	유해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50,000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확보
4	생활보건과	노숙인 결핵환자 지원 협의체 구성	21,640	노숙인 결핵환자 사업을 공공, 민간단체들이 협의체구성을 통해 기존사업의 효과 증대시키고 노숙인 결핵치료의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고자 함.
5	동물보호과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중성화센터(동물 보호건소) 조성 및 운영	500,000	°도입배경: 재개발예정지역의 동물이 유기되어 들개화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사업개요 - 중성화센터 조성 1개소 - 반려견 중성화 1200두 - 동물보호 캠페인 등
계			1,406,640	

- 협치사업은 행정환경의 다변화와 민간 부분의 역량 강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행정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 협치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함께 투입 대비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협치사업의 구체적 집행 로드맵을 집행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상명하달식 예산 편성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협치’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협치’라는 행정유형은 상당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시민과 공공기관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일방적이고 조급한 결정으로 시행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사료됨.
- 따라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편성된 협치사업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 반복적인 국비(가)내시 없는 국비반영 문제 개선 필요

-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별개의 세부사업인 저소득층 영아 가정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각각 21억 5,580만원과 28억 20만원으로 총 85억 2,82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구비 매칭 비율은 각각 30:35:35임.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예산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x472,050) 1,022,775	(x1,092,818) 2,367,773	(x2,092,579) 4,955,997	(x999,761) 2,588,224
자치단체경상보조	(x472,050) 1,022,775	(x1,092,818) 2,367,773	(x2,092,579) 4,955,997	(x999,761) 2,588,224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x472,050) 1,022,775	(x994,983) 2,155,797	(x522,933) 1,133,022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x1,029,240) 2,800,200	(x1,029,240) 2,800,200	

- 이 중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3개월분의 생리대를 보건소를 통해 지급하는 것으로, '16년 추경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어 성립전사용예산으로 선 집행중임.
- 또한 생리대 제조사 가격인상 발표('16. 5. 29) 이후 SNS를 통해 수건이나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용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 해지면서 사회 이슈화 되어,
 - 지난 7월 집행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통합건강관리 사업'으로 청소년 9,200명에게 5개월분의 생리대를 지원한 바 있음.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한 시적 사업임을 언급한 바 있으며, 생활보건과에서 '17년도 지속사업 여부임을 확인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구두로 확정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은 '16년 추경 내시를 근거로 국비분을 포함하여 총 28억 20만원이 시민건강국 예산안에 편성되었음.

〈2016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보조금 내역
(추경, 확정내시)〉

(단위: 천원)

시·도명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량 (명)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합계 A=(B+E)	290,315	6,360,800	3,010,000	3,350,800
통지액 B=(C+D)	290,315	6,270,800	2,920,000	3,350,800
서울(C)	49,861	1,077,000	323,100	753,900
소 계(D)	240,454	5,193,800	2,596,900	2,596,900

부 산	17,167	370,800	185,400	185,400
대 구	14,278	308,400	154,200	154,200
인 천	16,593	358,400	179,200	179,200
광 주	10,028	216,600	108,300	108,300
대 전	9,352	202,000	101,000	101,000
울 산	6,852	148,000	74,000	74,000
세 종	1,444	31,200	15,600	15,600
경 기	76,583	1,654,200	827,100	827,100
강 원	8,583	185,400	92,700	92,700
충 북	9,065	195,800	97,900	97,900
충 남	11,769	254,200	127,100	127,100
전 북	11,093	239,600	119,800	119,800
전 남	10,611	229,200	114,600	114,600
경 북	13,796	298,000	149,000	149,000
경 남	19,287	416,600	208,300	208,300
제 주	3,954	85,400	42,700	42,700
미통지역(E)		90,000	90,000	

* 기준 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 '16년 4/4분기 지원 예산액임

- 특히 '16년 예산안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 운영”사업 역시, 국비가내시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미확정된 사전 협의만을 근거로 국비 4억원을 계상하여, 시민건강국 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4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수정한 유사 선례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있어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확보 전 사업 타당성 조사 준비 등 오히려 여성정책실 소관 사업으로 국비가 편성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이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신규) : 조직규모와 위상에 맞는 사업 수행해야

- 동 사업은 새로운 푸드 트렌드 창출과 서울의 명소 개발을 위해 상징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로 조성함으로써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 도모를 취지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17년 신규로 예산 1억 3,800만원을 시비 100%로 편성하였음.

〈서울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비고
계	-	138,000	138,000	
사무관리비	-	3,000	3,000	
공모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	1,000	1,000	
회의운영비		2,000	2,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5,000	135,000	

- '14년부터 영업을 가능해진 음식판매자동자 일명 푸드트럭은 올해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치구에서 신고수리된 푸드트럭 운영대수는 '15년 최초 51대에서 '16년 9월 20일 현재 190대로 크게 늘어났음.

〈서울 푸드트럭 시설별 운영현황〉

계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유원시설	문화시설	공용재산	대학
190	24	3	111	2	43	2	5

-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은 취업애로 청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18년까지 푸드트럭을 500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푸드트럭 활성화 종합대책(안)”(식품안전과-27544, 2016.9.22.)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 중임.
- 동 사업은 종합대책(안)에 포함된 6대분야 14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 분야의 ‘푸드트럭 거리 조성으로 지역의 명소로 개발’ 과제에 해당함.
- 그러나 식품안전과가 활성화 종합대책의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점에서 푸드트럭 영업자 창업지원 사업 등의 핵심사업은 소상공인지원과 및 자영업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영업장소 공모발굴의 경우, 서울시 전 실국 및 사업소를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식품안전과 식품관리팀에서 종합대책의 14개 과제 중 10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위상과 규모,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 또한 최근까지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위생점검 실적은 전혀 없었던 바, 푸드트럭을 통한 경제활성화보다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생상 안전이 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못지 않게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한 안전한 길거리 음식 문화 정착 필요함.

4) 건강도시 환경조성(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및 취약 여성 건강관리사업 : 마을만들기 형태의 유사사업 중복 문제

-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은 인구 10만 내외 3~4개 동규모소생활권 단위로 주민주도형 건강의제 발굴과 건강관련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에 비해 17.8%(1억 34만원)가 줄어든 4억 6,366만원이 편성하였음.

〈건강도시 추진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계		364,000	564,000	463,660	△100,340
사무관리비		13,000	13,000	12,960	△40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	13,000	13,000	12,960	△40
민간위탁금		150,000	150,000	150,000	
	지원단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분과)	150,000	150,000	15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00	400,000	300,000	△100,000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0,000	400,000	300,000	△100,000
국제부담금		1,000	1,000	700	△300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1,000	1,000	700	△300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인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14년 지역이 중심이 된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으로 추진 되어 `1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17년 예산은 3억원으로 `16년에 비해 1억원 감액되었음.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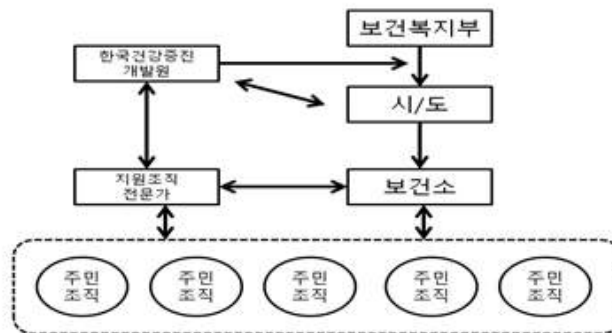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 스스로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관련 민간자원 개발·연계를 통한 주민 건강자치력 향상으로 지역 간 건강격차 감소

○ 사업내용

- 주민주도적 지역 건강의제 발굴(열린토론회, 건강조사 등), 주민조직화(전략수립과 실천), 민관 건강네트워크 구축(민관 협력) 등
- 지원단 운영 : 현장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등

○ 사업추진 체계



○ 추진실적('16.9월말 기준)

- 추진지역 : 6개구 7개소(32개동)
 - 성동구(살구권 : 왕십리 2, 행당 1·2, 금호 1~3가), 도봉구(방학권 : 방학 1~3), 금천구(독산권 : 독산 1~4, 가산 / 시흥권 : 시흥 1~4), 노원구(상계권 : 상계 2~5), 양천구(신월권 : 신월1~7), 은평구(봉산권 : 갈현 2, 구산, 역촌)
- 5개구 주민 열린토론회(8회 678명 참석)
 - 총 31개 의제발굴(쓰레기 무단투기 및 생쓰레기, 걷기 및 운동공간 부족, 식생활 개선, 스페이스 등)
- 주민 조직화 : 33개(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건강소모임)
- 건강네트워크 구축 : 6개구 89개 기관(단체) 연계
 - 동 주민센터, 의료생협, 생활협동조합, 주민건강모임, 마을지원센터, 시립병원, 전통시장 상인회

○ 한편,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여성건강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전통시장, 감정노동 등 취약 근로여성의 건강관리, 건강실태조사, 주민소모임 운영,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지원하는 내용으로 '17년 예산안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3억 2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 (A)	2017예산(안) (B)	증감(B-A)
계	500,000	324,000	324,000	
사무관리비	20,000	24,000	24,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80,000	300,000	300,000	
취약여성 건강관리 지원	480,000	300,000	300,000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대 상 : 7개구 감정노동 및 전통시장 근로여성, 장애여성 등
- 방 법 : 지역사회 참여형(민·관협력)
- 내 용
 - 지역사회 여성건강을 위한 민관협력 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내 감정노동, 전통시장, 장애 등 취약여성의 건강요구를 반영한 시범사업
 - 건강실태조사, 주민소모임 구성 및 여성리더 양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지원 등

□ 추진경과

- '12년부터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강화 사업' 추진
 - 공통사업(여성암 검진률 향상, 여성리더양성,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등) : 25개구
 - 시범사업(지역사회 참여형 민관협력 여성건강사업) : 4개구
- '13년 공통사업 25개구 + 시범사업 6개구
- '14년 공통사업 25개구 + 시범사업 8개구
- '15년 공통사업 25개구 + 시범사업 6개구
- '16년 공통사업 중단, 취약(근로)여성사업으로 시범사업 집중 추진(6개구)

□ 추진체계



□ '16년 추진현황

- 감정노동 근로여성 건강관리 지원 : 3개구(강북구, 중구, 중랑구)
- 전통시장 근로여성 건강관리 지원 : 3개구(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 장애여성 건강지원 네트워크 강화 : 1개구(강동구)

-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과 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건강문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화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민관의 협력을 도모하는 마을만들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두 사업의 사업개요를 비교해 보면, 사업의 대상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나 보건소를 매개로 수행되는 등 그 추진체계나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함.
- 또한 협치의제 사업으로 민관협력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다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유사 사업들에 대한 통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5) 반려동물 안심보험 사업(주민참여) : 유사중복 사업문제

- 동 사업은 반려동물 의료보험료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여 동물 유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으로써, '17년 예산은 5,000만원으로 편성됨.

〈반려동물 안심보험 사업〉

(단위: 천원)

구 분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비고
계		50,000	5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반려동물 의료보험 지원		50,000	50,000	

- 가족규모 축소, 고령화 진전 등에 따라 고독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¹⁾,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 연구(2016)」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20.4%로, 서울시민 5가구 중 1가구는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동물 진료비가 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의 취지 자체는 인정이 되는 바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

응답내 용	동물 진료비	이웃 피해	사육 시간 부족	위생 문제	기타	동물 시설 부족	거주 공간 문제	제적 문제	동물 이상 행동	가족 반대	무 응답	계
응답비 율	27.3	13.3	12.7	12.2	10.6	8.0	7.0	3.6	3.4	1.8	0.2	100.0

출처 :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연구」 pp. 12.

-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동물등록된 반려견에게 의료실비보험의 5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자치구를 선정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임.
-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수행기간이 통상 1년간임을 감안할 때 한시적인 기간 동안 민간보험을 통한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 지원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5.3.2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KB 지식비타민」 15-23호.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물 유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존재함.

- 현재 국내 반려동물 대상 보험은 2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 반려동물 보험 비교〉

구분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상품명	롯데마이펫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출시시기	2013년 3월	2011년 11월
가입대상	개, 고양이 (신규 만 7세 이하, 갱신시 11세까지)	개 (신규 만 6세 이하, 갱신시 10세까지)
보험기간	1년	1년
보장내용	수술치료비(50/100/150만원) 입원치료비(5/10만원) 통원치료비(5/10만원)	상해 및 질병치료비(100만원) 대인/대동물 배상책임손해(100만원)
자기부담금	30%, 50% 중 본인선택 가능	상해/질병 : 1만원 공제 후30%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납입주기	연납(일시납), 월납(2회납, 4회납)	연납(일시납), 월납(12회납)
납부보험료수준	수술·입원형: 평균 연 10만원 종합형: 평균 연 35만원	평균 연 50만원

자료 : 보험사 각사

출처 : <http://www.skyedaily.com/>

- 한국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²⁾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보험이 과연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칫 해당 예산 집행으로 인해 사업대상 주민이 아니라 사보험의 가입자 수만 늘려주고 홍보만 해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2) Wealth Management(2015.1호), 펫팸족 1,000만 시대, 애견보험으로 든든하게

- 최소 10만원 이상의 자부담 보험료가 발생하는 만큼 저소득층인 사업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수요를 파악해야 할 것임.
- 또한 등록된 반려견만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데, 특히 현재 가입이 가능한 두 보험상품이 개나 고양이 외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임.
- '17년 서울시 예산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과 달리,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의 개수나 금액 면에서 크게 늘어났으며, 중복사업이나 사업계획의 부실함 등의 이유로 집행부 역시 부적합 의견을 낸 다수의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음.
- 주민참여예산은 지역민원의 해결창구가 아님을 확실히 인식하고, 동사업처럼 부실한 사업계획과 불명확한 목표설정으로 사업의 추진 전부터 재설계가 요구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예산편성에서 걸러내거나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안전망병원 운영 : 과도한 지원 경계해야

- 안전망병원은 민간의료기관 중 저소득, 행려, 노숙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티병원,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외국인노

동자전용의원, 푸르메재활의원의 6개소에서 무료진료 대상자가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입원, 검사, 수술 등의 전문 의료적 처치가 요구될 경우 시립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임.

- 도티병원이나 그 외 무료병원 등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진료를 순수한 자선적 선의에서 해 오고 있었으나 급성기 질환이나 응급수술을 요구할 경우 해당 병원들은 부족한 의료장비나 진료과 등을 이유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립병원에 의뢰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안전망병원 사업은 무료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건강에 대한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10조는 가장 관계가 깊으며 헌법 제35조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규정함.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인용되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가의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망 병원에 의뢰되는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안전망병원에서 의뢰되는 환자들은 제도적인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로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환자, 건강보험적용 예외대상(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무료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면 무료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무료병원에서 적절한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립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예산은 5억원이었고 2016년 예산은 4억 2천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은 6억 3천 5백만원으로 2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전체 대비 예산의 증감률은 51%로 매우 높은 증가를 보였음. 증가된 사유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존 안전망병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위탁금도 6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안전망병원 운영 예산 전체〉

(단위: 천원)

구 분	2015예산	2016예산(A)	2017예산(안) (B)	증감(B-A)	증감률
계	500,000	420,000	635,000	215,000	51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5,000	175,000	175,000		
민간위탁금	295,000	245,000	310,000	65,000	26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	150,000	

- 증가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에 사업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원대상 1인당 평균금액을 책정하였음. 각각 병원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상급병원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130만원으로, 동부병원의 경우는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함.
- 다음으로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살펴보면

민간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5개구에 각각 3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

- 안전망병원에 해당하는 도티병원, 성가복지병원,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이 소재하는 각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보낸 후 각 자치구는 해당 병원에 의료인력채용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임.

〈2017년 안전망병원 운영 예산 산출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서울의료원 진료비*명 1,300,000*135 : 175,000천원
민간위탁금	보라매병원 진료비*명 1,300,000*200 : 260,000천원
	동부병원 진료비*명 500,000*100 : 5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의료기관 운영 지원 30,000,000*5개구 : 150,000천원

- 안전망병원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예산편성에 있어 시립병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타 사업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시립병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³⁾에 의

3) 제8조(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1.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2. 병원의 전염병등, 정신병등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 행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시에서 직영으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그 공사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자
4.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수용자측의 부상자

②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준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여 조례에 정해진 금액만큼 의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병원 각각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의료원의 감면 제도들은 서울의료원 예산(안)의 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는 것들로, 안전망 병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안전망 병원 사업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의문.

○ 또한, 시립병원이 하고 있는 301네트워크 사업 외에도 시립병원들이 사회사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안전망병원을 통해 의뢰되는 환자들은 시립병원 사회사업실에서의 사정(assessment)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병원은 치료만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며 사회사업실 기능확대를 통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지켜 나가는 것도 중요함. 의료사회사업의 주요한 실천방법인 자원예의 연계기능을 활용할 필요성 존재한다 하겠음.

〈서울시립병원 자체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제도〉

병원명	감면대상	감면 진료비 항목	감면범위(감면율)
서북 병원	의료수급권자(1,2종) (시설입소자,행려환자)	급여,비급여진료비	100%
	차상위계층,의료수급권자(1.2종)	급여,비급여진료비	30%
	서울시 안전망 병원 의뢰 환자	전산화 단층 촬영료	100%
		결핵 환자 진료비 전체	100%
은평 병원	전염병동,정신병동근무직원중 건강진단을요하거나감염,상해 틀입은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00%
	시주관각종행사,공사중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00%
	노숙자, 행려, 시설수급자	비급여진료비	100%
	의료급여, 장애인	비급여진료비(치과,MRI)	30%
	서울시 안전망 병원 의뢰 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100%

병원명	감면대상	감면 진료비 항목	감면범위(감면율)
		MRI 검사	100%
	어린이낫병동, 발달치료센터 의료급여수급자(1,2종)	비급여(행동치료)	100%
서울 의료원 (본원)	의료급여, 차상위환자	선택진료비	100%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은평의 마을, 여성보호센터)입소자	비급여 진료비	100%
	의료급여입원환자일부(의사 의감면요청서수령)	비급여MRI,CT, 초음파검 사비	100%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 금	외래50%입원80%
	북한이탈주민(치과 진료지원)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 금	틀니:1인최대2백만원 보철:서울시지원금외20%
	행려환자(구청승인)	비급여 진료비	100%
	65세이상서울시거주의료급여 환자로이동치과진료대상자	이동치과 진료비	100%
	학대피해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건강안전망 병원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여성폭력피해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위기청소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희년의료공제회외국인,이주민	선택진료비	100%
	건강검진 후 외래환자	진찰료1회	100%
	직원본인, 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직원본인, 배우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 직원 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25%
	직원 중 업무상 재해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의료원 귀책사유 대상자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 에 따름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서울 의료원 (분원)	의료급여, 차상위환자	선택진료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은평의마을, 여성보호센터)입 소자		비급여 진료비	100%
의료급여입원환자일부 (의사의감면요청서수령)		비급여MRI,CT, 초음파검 사비	100%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 담금	외래50%입원80%
행려환자(구청승인)		비급여 진료비	100%
65세이상서울시거주의료급여 환자로 이동치과진료대상자		이동치과 진료비	100%
학대피해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건강안전망 병원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병원명	감면대상	감면 진료비 항목	감면범위(감면율)
	여성폭력피해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위기청소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희년의료공제회외국인,이주민	선택진료비	100%
	건강검진 후 외래환자	진찰료1회	100%
	직원본인,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직원본인,배우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50%
	수탁병원 직원 직계가족	진료비 본인부담금	25%
	직원 중 업무상 재해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의료원 귀책사유 대상자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의료분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동부병원	극빈자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차상위등)	본인부담금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30까지 ○기타극빈자 -병원장방침에 의함
보라매병원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100%
	의료급여환자	상급병실료	1인실 30%, 2인실 30%, 4인실 70%
	차상위계층	선택진료비	100%
	행려환자	비급여	100%
	노숙인	선택진료비	100%

- 또한 안전망병원 조례⁴⁾에 의하면 재정지원에는 시장의 지도감독의 무가 부과됨.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는 규제를 불리일으킬 가능성이 높음.
- 해당 무료진료의원들은 안전망 병원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나 불필요한 관의 간섭 보다는 민간 자율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 이는 경상예산으로 한번 편성하고 나면 이후에도 계속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에 앞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안전망병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망병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망병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안전망병원을 통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기능이나 시립병원이 이미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이 많아지고 급여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현장의 업무는 복잡해질 것임. 다만, 병원과 무료진료민간병원사이의 연결고리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안전망병원 사업을 단순 의료비 지원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경상예산으로 인력보조를 해 준다면 시립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타 의료기관의 사회사업실들과 연계가능한 인력을 구성하여 치료비 지원액을 줄이고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원간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초기에는 동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만한 동력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면 사업이 3년 이상 진행되어온 상황에서 사업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그리고 안전망병원에 의뢰되는 환자들 중 일부는 의학적 치료 외에도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알코올중독, 노숙질환자 요양을 위한 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러한 이유로 인력에 대한 지원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이미 시립병원에 지원되고 있는 공공의료손실보전에 대한 금액으로 해당 환자들에 대한 공공의료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립병원의 설립목표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망병원을 통한 치료비 지원은 예산을 중복 사용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진료비 감면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사업실의 사업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립병원 사회사업실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시립병원에 외부 펀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7) 잣절 건강나눔지원센터 시설 보완 : 단순 시설보강 사업에 예산투입 부적절

-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로구에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잣절 건강나눔지원센터의 열악한 시설 및 교육용 장비를 보완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탕비실 및 창고 보수, 출입구 주변 어닝 설치 및 시설 보완, 교육 및 회의용 장비 구비, 회의실 책상 집기 정비 등으로 나타남.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5)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광의의 의미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협의의 의미에서는 지방재정의 분권화, 주민에의 권한

5)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양, 공유화를 주장하는 시민적 통제장치임.

- 또한, 주민참여제도는가 지향하는 바는 과정적 측면에서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담론지향성의 이념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 편성으로 대응성, 효율성, 형평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⁶⁾
-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에 비하여 현재 예산이 편성된 잣절 건강나눔지원센터 시설 보완 예산의 경우 단순하게 시설의 기능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주민참여예산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존재함.
- 또한 동 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의 신청 또는 자치구의 예산보조가 타당할 것으로 여겨 시비보조금의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8)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사업(주민참여) : 기존 서비스와 유사 중복 존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기존서비스와 유사, 중복사업을 제외하고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음. 이미 집행부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나 집행부의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짐.

6) 윤성일·성시경·임동완(201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분화: 제도화 과정의 분석과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25(3) 385-410.

- 중구에서 실행하게 될 “나도 우울증, 이제 숨지말고 치료하자” 사업의 경우 자치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에서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기능특화된 것으로 보이나 서비스의 대상자도 불분명함. 동 사업의 경우 치료가 목적이라면 대상자를 치료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점에 있어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미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서비스가 자치구 및 시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므로 중복성격을 지님.
- 동대문구의 “마음편한 건강도시 회복 실천운동”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고통받는 사람들, 일터에서 시민들을 돌보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유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편성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짐.
- 종로구의 “생애주기별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는 생명존중 학교 지원사업, 쪽방촌 생명존중 마을 사업, 임산부 우울증 관리 등으로 이루어지는 데 생명존중학교는 이미 서울의료원에서 진행중인 생명문화버스 사업과 사업대상이 일치하며 사업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쪽방촌 생명존중 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찾동” 등으로 의뢰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마지막으로 임산부 우울증 관리의 경우 보건소에서 이미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건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의뢰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짐.
- 양천구의 “정신장애인 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의 경우 양천구를 대상

으로 하는 사회조사는 양천구청에서 실시해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조사도구 등 연구설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는 바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 활용방안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전수조사라고 하였으나 전수에 대한 양적조사 보다는 소수에 대한 질적연구 등으로 전환해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됨.

- 차년도 부터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사업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017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3년간 각 자치구별 평균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2017년 시민이 함께하는 마음건강증진사업(주민참여 예산) 목록〉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종로구(생애주기별 생명존중 프로그램 운영) 30,000,000	: 30,000천원
	중구(나도 우울증. 이제 숨지말고 치료하자) 150,000,000	: 150,000천원
	성동구(다함께 쓰담쓰담, 촌화만사성 92,200,000	: 92,200천원
	동대문구(행복이 피어나는 집, 동대문구민 행복하게 살기 추진운동, 동대문구 마음편한 건강도시 회복 실천운동) 111,500,000	: 111,500천원
	중랑구(마음이 행복한 건강한 일터) 100,000,000	: 100,000천원
	성북구(우리동네 찾아가는 마음건강 Navigator, 환자를 돌보는 이들을 위한 자기돌봄서비스 111,084,000	: 111,084천원
	도봉구(도봉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우울증예방 행복 프로그램 30,000,000	: 30,000천원
	노원구(우울감 낮추구! 정신건강 올리고!) 144,790,000	: 144,790천원
	서대문구(아동,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찾아가는 취약계층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98,000,000	: 98,000천원
	마포구(정신장애인들이 만드는 마을 라디오제작 프로젝트) 200,000,000	: 200,000천원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양천구(정신장애인 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51,000,000	: 51,000천원
	강서구(산후 우울극복 프로젝트) 50,000,000	: 50,000천원
	금천구(자살시도자 희망 KIT) 30,000,000	: 30,000천원
	영등포구(신바람 내인생~어두운 회색 NO, 영롱한 실버 YES) 60,000,000	: 60,000천원
	관악구(고시촌 마음건강지킴이) 115,000,000	: 115,000천원
	서초구(마음이음지킴이 동아리) 30,000,000	: 30,000천원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예산 및 결산〉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3	(x-) 2,500,000	(x-) 0	(x-) 0	(x-) 2,500,000	(x-) 2,500,000	(x-) 0	(x-) 0
2014	(x-) 2,500,000	(x-) 0	(x-) 0	(x-) 2,500,000	(x-) 2,500,000	(x-) 0	(x-) 0
2015	(x-) 2,500,000	(x-) 0	(x-) 0	(x-) 2,500,000	(x-) 2,500,000	(x-) 0	(x-) 0
2016	(x-) 2,500,000	진행중					
2017 (안)	(x-) 2,500,000	예산안 심사 예정					

9)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운영 : 사업은 예상한대로 실행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아이존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임.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또는 고등교육과정에서 심리학을 이수한 자와

같이 특수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기에 10개소의 아이존은 모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아이존은 본래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금천아이존이 자진폐쇄하게 됨으로서 10개소로 줄어들었음.
- 아이존은 시의 시설에 입소되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나 적합한 시의 유희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탁법인에서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존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수탁법인이 임대료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존재.

○ 금천아이존의 경우도 시의 유희공간이 아닌 수탁법인이 마련한 공간에서 운영하다가 수탁법인의 자진폐쇄로 인하여 수탁기간만을 채우고 종료된 사례임.

○ 2017년의 아이존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11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음. 11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총 예산은 민간위탁에 37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 운영비가 8억 6천 9백만원, 인건비가 27억원,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1천55만원 산출되어 있음.
- 아이존 종사자의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급됨. 따라서, 전년대비 인상된 서울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세부예산이 산출되었으며 복지포인트 역시 2017년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에 근거하여 제공될 예정임.

- 예산산출의 세부근거를 살펴보면 총 11개소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원할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아이존 운영예산〉

구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 4
계	(x-) 3,451,426	(x-) 3,574,866	(x-) 3,728,015	(x-) 153,149	(x-) 4
민간 위탁금	(x-) 3,451,426	(x-) 3,574,866	(x-) 3,728,015	(x-) 153,149	(x-) 4

〈2017년 아이존 운영예산 세부산출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운영비 79,000,000*11	869,000천원
	인건비 2,705,866,000*인상률	2,848,465천원
	복지포인트	10,550천원

- 그러나 정서행동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의 수가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며, 금천아이존의 사례에서 보듯이 2017년에도 자진폐쇄를 신고할 아이존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불가함.
- 새로운 수탁자를 구하기 위하여서는 시의 유희공간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아이존 수탁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서비스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임.
- 아이존 등 그 외 동종의 심리적 지원,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의 중요성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자간 라포

(rapport)의 형성 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짐.

-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건강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보건소 기능개선, 보건지소, 분소 지원 사업등과 더불어 유희공간을 해당 시설에 확보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임.
- 또한, 금천아이존이 자진폐쇄할 당시 적절한 대체 수탁자를 구하지 못한 것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적절한 수탁자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서비스 전반의 인력의 처우문제가 불거지며 아이존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처우개선 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노무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수탁법인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아이존 등 사업이 시민건강국이 분국되기 이전부터 진행되던 사업이기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던 측면이 있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우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동 사업내용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공감가능하나 2017년은 기존 사업이 축소된 원인을 따지고 내실을 다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본 사업의 2017년 확대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아이존의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나 대부분 동종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기인원수는 모두 많음. 그 이유는 동종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마다 1인이 여러 장소에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기

때문임.

- 또한, 아이존의 경우 민간에서 제공하는 동종유사서비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특성 보다는 확고한 공적영역을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이유로 동 사업은 수탁자 선정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감액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또한 동 사업이 집행부의 예상대로 집행된다 하더라도 100%의 집행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시민건강국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시의 유희공간 문제 외에도, 아이존 역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에,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의 노무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발달장애 아동과 정서·심리문제를 가진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고 발달장애의 경우 집행부의 복지본부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에 앞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본 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임.7)

7) 동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존재함. 안정적 사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0)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운영 : 사업수행 불확실성 존재

-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이하 “시립병원”)의 중요성과 사회적 투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 측면의 필요성과 예산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적 조직에 의한 컨설팅 요구가 증가함.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플랫폼으로써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역량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최근의 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정책은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요청받고 있음

-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의 싱크탱크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1차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29억원임.
 - 시민건강국은 재단 출연을 위한 금액으로 32억 6천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⁸⁾.
 - 다만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규모(안)의 각주를 통해 살펴보면 재단의 설립 준비금으로 9억원을 필요로 했으나 예산산출내역에서는 7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2억원의 차액을 고려해 보면 예산은 이미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시민건강국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8) 재단설립을 위한 시민건강국 계획서중 일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규모(안)〉

(단위: 백만원/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인건비	1,600 (584)	1,656 (605)	2,102 (1,014)	2,175 (1,049)	2,251 (1,086)	9,783 (4,338)
사업비	1,400 (685)	1,422 (696)	1,858 (1,120)	1,888 (1,138)	1,918 (1,156)	8,486 (4,794)
운영경비	661 (544)	672 (553)	877 (757)	891 (769)	906 (781)	4,007 (3,404)
성과급	148	150	196	199	202	896
예비비	100	100	100	100	100	500
초기설립비용	1,202	-	-	-	-	1,202
총계	5,110 (3,263)	4,000 (2,104)	5,133 (3,187)	5,254 (3,255)	5,377 (3,326)	24,874 (15,134)

※ 기본재산 9억원 포함, '16-'17년 정원 35명, '18년 이후 정원 45명 기준 ():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예산 제외
한 순증액

- 또한, 동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도 일정부분 마련되어 있음.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사업 수행에 있어 원론적인 범위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 사업의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자칫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동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선행해야 하는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으나 중앙정부와의 이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필요함.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서울시와 주무부처간 협의내용이 필요하나 집행부서는 조례안 통과 이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식적 의견교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무부처와 구두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였으나 구두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구두협약이 구체적인 효과로 나타날 지는 미지수인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계획을 의미하며 예산을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함. 이러한 이유에서 예산은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됨. 2015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늦어 불용율 100%를 기록한 “안심의료비” 사업의 전례를 보면
 - 2015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안심의료비”사업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사업의 실행이 정해짐으로 2014년에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되어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은 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편성이 되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수용의견의 도달시기가 늦어(2015년 12월 11일) 2015년에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2016년의 예산편성이 어려워 2016년에 해당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음.
 - 집행부의 내부에서 동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나 “안심의료비” 사업의 전액 불용과 유사한 사업진행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 하겠음. 특히, 물리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와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늦은 시기에 이루어질 경우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은 본 사업 예산이 불용이 될 불안감을 가

중시킨다고 볼 수 있음.

- 위와 마찬가지로 본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2016년에 행정자치부와 주고받은 공문은 재단설립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함.
 -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반대의견을 내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중앙정부(행정자치부)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협의 요청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 ① "공공보건의료재단"설립을 통해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시립병원에 대한 연계·조정·협력, 썩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나 연계·조정·협력의 기능은 보건의료정책과의 고유업무로 출연기관의 대상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 ② 시립병원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썩크탱크로의 기능은 현재 있는 조직인 "공공의료지원단" 의 확대개편 방안이 타당함.
 - ③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으로 인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업무 경감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여 조직개편안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재단설립 반대의견이 보건복지부의 최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 단체 등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 지원

단의 사업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단법인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지 않고 있어 재단법인 등을 설립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내용을 수행토록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도 그 법인 등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⁹⁾

- 따라서, 재단의 설립을 통해 집행부가 우선순위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수행에는 무리가 없으나 공공의료지원단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료지원단과 재단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추후 재단의 설립 및 사업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현재 지원단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임. 재단은 지원단이 훌륭하게 역할수행을 해서 지원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재단의 설립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2016년 10월 현재 불용률은 60%가 넘으며 사실상 인건비 집행정도로 여겨짐.

- 그간 지원단이 수행한 사업내용으로 볼 때 지원단의 사업을 흡수하는 형태는 재단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집행부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전문기관인 서울의료원에 수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

9) 보건복지부 의견조회 결과

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적절한 인력의 확보에도 실패했던 점¹⁰⁾은 앞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나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게 함.

- 집행부는 재단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원단의 예산을 6월 까지 편성하고 7월부터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는 등,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계획이 유기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재단의 역할에 대하여 확고하게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재단의 설립이 가능할지에 대하여서는 의구심이 존재함.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2건의 연구보고서가 존재하는데 각 연구보고서 모두 재단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재단의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에 있어 재단의 역할과 사업기능에 대하여 수정 의결한바 수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적절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재단의 설립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임.

○ 이러한 이유로 재단의 설립은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재단이 하반기(7월)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실제

10)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직제 중 수석연구원의 자리는 민간위탁 후 늘 공석이었고, 공공의료지원단에서는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함. 집행부가 예측하는 대로 세종시 등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위원 급의 연구자가 재단에 참여하게 되려면 상당한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바 현재의 예산으로는 해당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함.

적인 사업수행은 인력충원 등으로 인하여 늦어질 것으로 예측함.

- 안심의료비 사례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의 회신의견이 12월에 도착하는 등 늦은 시간에 도착하여 전액불용 또는 높은 불용률을 보일 것이 예측되며
 - 보건학 박사나 의학박사 등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경우에도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한바 있음.
 -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으므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재구성하여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와 새로이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점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짧아져 불용될 것을 우려하여 재단의 기본재산 7억원을 제외한 22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30~50% 감액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1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사업수행실적 떨어지며 출구전략 부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존재하며 시립병원의 지원조직으로 존재함. 즉, 설치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존재하나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이를 조례로 만들어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음.

- 지원단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현재 집행금액은 7억 5천 1백만원으로 불용률이 62.4%에 달함. 2017년 예산은 6억 8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5.6%감소되었음.
- 지원단의 특성상 연말에 사업비의 지출이 많음을 예상하여도 현재의 집행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또한 2017년은 1~6월까지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반년동안 6억 8천 7백만원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 현재 집행부는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액으로 6억 3천 9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집행예정액이 모두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불용액은 6억 9백만원으로 불용률은 3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2016년 집행내역〉

예산 현액	2016년 10월말 기준			2016년 12월말 기준			
	원인 행위액	불용액	불용률	11월, 12월 집행 예정액	집행 추정액	불용 추정액	불용 추정률
2,000,000	751,110	1,248,890	62.4	639,000	1,390,110	609,890	30.5

〈2017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예산〉

2015	2016	2017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비율	증감사유
1,800,000	2,000,000	687,995	△1,312,005	-65.6	공공보건의료 재단 설립으로 감편성

- 2017년 예산편성에 앞서 2016년의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2016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집행 예정액을 전액집행한다는 가정 하에서도 집행률이 떨어지는 바 2017년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 존재.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될 예정이고 재단이 실질적으로 지원단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여 예산책정을 한 바 있음.
 - 출구전략으로서 반년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재단의 설립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재단이 설립되지 않을 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원단을 운영할 것인지, 재단의 설립이 늦어지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수탁과정은 총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시는 협약서에 정책변경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나 사전에 시와 의료원이 협의해야 하는 단서조건이 달려 있음.¹¹⁾
 - 그러나, 반년치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사업종료를 예측할 수 있게 한 후 시와 의료원이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구심 있음. 신의성실의 원칙은 을이 갑에게만 제공하는 성실의 의무가 아니라 갑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원칙임.
- 더욱이, 불확실한 사업계획에 기대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대한 예산편성의 오류로 보이며 집행부는 2017년부터 지원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서화된 방침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음.

11) 추후 종사자의 고용 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존재하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 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집행부는 적절한 출구전략으로서 지원단과 재단간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재단의 설립이 확정되기 이전 까지 집행부가 지원단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여긴다면 불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반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협약서의 조건을 이행하여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방법이 존재함.
- 추후 연구과제 등을 재단으로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연구과제 이관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온전히 수집하여 집행부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집행부가 재단의 설립근거 중 하나로 지원단의 낮은 성과를 들었으므로 지원단의 운영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임.

12) 심혈관질환 코호트 사업 : 서울시 특성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사업의 정체성 희박

- 심혈관질환 코호트 사업은 연구대상자를 추적하여 관찰하는 장기종단연구로 심혈관질환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25%, 서울시 심혈관질환 유병율의 증가 등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질환 예측인자 발굴 및 정책 제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에 맞는 대사증후군 기준의 임상적 근거 마련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강화 및 체계적인 중

점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017 심혈관질환 코호트 사업 예산안〉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 △35
계	(x-) 278,320	(x-) 468,443	(x-) 300,000	(x-) △168,443	(x-) △35
사무관리비	(x-)	(x-) 468,443	(x-) 300,000	(x-) △168,443	(x-) △35
연구용역비	(x-) 278,320	(x-)	(x-)	(x-)	(x-)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인건비 96,653,000 = 96,653천원
	검사비 추적조사 164,781,000 = 164,781천원
	시설장비 임대비 등 38,566,000 = 38,566천원

- 해당 연구는 이미 3회차에 접어들었으나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먼저 다수의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의학연구에선 거의 중요치 않으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종단연구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모하는 만큼 서울시가 이러한 장기종단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종단연구를 실행한 것은 문제로 여겨짐.
- 또한, 본 사업에서 2015년 코호트의 이탈율이 약 25%에 이르는 점은 장기종단조사에서는 치명적인 일임. 물론 이탈표본의 수 만큼 신규 표본을 추가하는 연구방법이 있어 해당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원표본의 유지율은 장기종단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

- 또한, 동 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여 식단관리, 운동요법 등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동기부여 효과를 들었으나 서울시가 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에 어려움 있다고 하겠음.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는 의과대학 등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먼저, 동 사업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회조사연구라기 보다는 의학 조사연구의 성격이 강함.
 - 동 사업의 보고서가 매해 인과관계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단순 측정을 반복하여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는 편리한 점은 수긍되나 보고서에 임상적 현황 외의 서울시의 특성과 관련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동 사업의 내용이 서울시 심혈관질환 예측인자 발굴 및 정책 방향 수립이기 때문에 의료장비를 이용한 측정과 의료적인 예방방향만을 설정하는 것이 서울시의 어떠한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이러한 이유로 서울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함.

- 동 사업의 연구보고서에 사회적요건의 개선 등을 위한 측정도구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임상적 근거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움이지 서울시민의 어떠한 특성이 반영된 임상적 근거가 발견되어 서울시민에게 수혜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임.
 - 서울시가 건강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임상적근거만

을 특수하게 측정하기 보다는 사회적요인에 대한 측정이 필요함. 실제 설문지를 살펴보아도 사회적요인들에 대한 측정은 일부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특징이 반영된 사회적 특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본 연구가 제대로 결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음.
- 그렇다면 장기종단연구로 최초 연구설계 당시에 설계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데, 10년 이상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추적조사의 특성상, 또 유효한 표본수¹²⁾의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연구가 타당하다면 추후 물가의 상승, 추적조사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50억원 이상 투입하는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하여 장기종단연구 사업으로 존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사업의 보고서에서 밝히는 바 1~3차년도 까지의 사업이 기본적인 모형검증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기간이었고, 동 사업의 예산심의에 있어 추후 동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될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동 사업이 의학연구의 연구결과를 가지는 바, 사회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낮고, 서울시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것임. 이러한 이유로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정책 보다는 일반적인 의학연구의 결과가 나타날 것임.

12) 심혈관질환 모형을 개발하는데 대상자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적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대상자들은 대개 5000명 정도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코호트는 대사증후군대상자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서 5000명보다 적은 대상자수로 가능성 있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 관련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기존의 연구에 비해 심혈관질환에 대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이에 적은 대상자수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심혈관질환 코호트 보고서 중 발췌-

- 사는 지역에 따라서 건강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단지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은 서울시민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보다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에 대한 조사를 하는 연구로 여겨짐.
- 또한, 집행부에서 수탁을 주는 연구가 경상사업처럼 반영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함. 복지본부나 여성가족정책실의 종단연구는 서울시 복지재단(서울연구원으로 이관된 서울시 복지패널)이나 여성가족재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13) 보라매병원 PACS : 잘못된 비교견적을 토대로 예산편성

- 보라매병원은 노후화된 PACS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8억 8천 6백만원을 책정하여 예산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고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
- PACS는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약자로 의학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CT, MRI 등 여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달하고 판독정보와 이미지를 다시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 또한 유사 사례를 검색하여 자료제공을 할 수 있는 DB의 역할도 함.

<2017 보라매병원 사업 예산안>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 1
계	(x-) 18,918,876	(x-) 14,191,557	(x-) 14,413,250	(x-) 221,693	(x-) 1
민간위탁금	(x-) 15,034,076	(x-) 11,992,991	(x-) 11,047,440	(x-) △945,551	(x-) △7
민간대행 사업비	(x-) 3,884,800	(x-) 2,198,566	(x-) 3,365,810	(x-) 1,167,244	(x-) 53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민간대행사업비	필수의료장비도입비 = 2,328,990천원 2,328,990,000
	시설개선공사 = 150,000천원 150,000,000
	- 변전실 노후 수배전 설비 교체 = 150,000천원 150,000,000
	노후전산시스템(PACS) 구축 = 886,820천원 886,820,000

- 예산편성의 사유로 보라매병원은 노후화된 PACS 장비는 Windows 2003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음. 아래는 보라매병원에서 밝힌 도입사유임.
- ICT의 발달로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시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기존 SW 및 HW의 연계 불가로 환자 진료 서비스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증가된 환자 진료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교체 도입이 필수적임.
- 현재 대다수 업무를 PACS에 의존하고 있는 영상의학과와 검사 대기시간이 급속하게 증가되어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PACS의 기능 향상이 필수적임.
- 2008년 도입된 PACS 서버는 MS '윈도우서버 2003'으로 보안지

원('15.7.14)이 중단되어 지속 사용시 취약점 노출 등 보안 위협 증가.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책-1744(2015.6.25.)호,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담당관-11714 (2015. 6.26.)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352 (2016.3.15.)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984(2016.5.16.)호 관련 MS '윈도우서버 2003' 보유현황 및 교체 계획 제출.

○ 보라매병원에서 밝힌 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가능함. 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나타난 오류가 존재함. 먼저 집행부의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의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를 위하여 보라매병원이 제공한 비교견적서를 살펴보면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을 구축한 “인피니트” 외에도 2개사에 의한 견적서를 제공하였음.

- 가리온정보기술의 견적서는 총액 97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테크하임의 견적서는 932백만원으로 나타남.
- 현재 사용중인 인피니트의 경우는 886백만원으로 나타나며 현재 인피니트의 견적서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 그러나 인피니트를 제외한 2개사의 경우에 비교견적서 상에 PACS migration 비용이 각각 100백만원씩 책정되어 있음. 해당 비용은 기존 기기(인피니트)와의 연동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전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해당 비용을 제외하면 각각 견적서의 견적 단가가 줄어들게 되고 외려 최저가로 보였던 인피니트가 최고가가 되는 결과가 나타남.

- 보라매병원의 견적금액에 해당하는 기기는 인피니트의 M6로 메디컬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비용 효과성이 최적화 되어 있었어야 함.¹³⁾

이중 인피니트 'M6'는 PACS 교체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제품. 김동욱 대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 중인 기존 메디페이스 제품과 2005년 인수한 마로테크 PACS를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하나로 통합한 M6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M6은 마로테크 PACS인 마로시스 서버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기존 서버에 새로운 뷰어만 설치하면 된다”며 “PACS 교체를 주저했던 고객병원들에게 교체에 따른 불편함과 구축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PACS 비교견적 요약〉

	가리온정보기술	인피니트	테크하임
최초 견적	979백만원	886백만원(최저가)	932백만원
데이터 이전비용 제외후	879백만원	886백만원(최고가)	832백만원

- 타 병원의 구축사례를 살펴보면 보라매병원과 유사한 사유로 PACS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바(북부, 동부 유사 시기 도입) 동부와 북부병원이 계획에서 제외되는 이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보라매병원에서 밝히는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PACS 서버의 운영시스템은 MS ‘윈도우서버 2003’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안지원(‘15.07.14)이 중단된 상태로 새로운 해킹 시도를 방지할 만한 기술적 방안이 없는 상태라면
- 해킹으로 인한 진료기록 유출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동부와 북부병원의 경우는 왜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는가에 대

13) 2008년 3~4월 행복관 오픈시 도입된 Marosis PACS SW 및 HW가 약 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른 PACS 시스템 교체 도입 필요라고 보라매병원측은 밝히고 있음.

한 집행부의 설명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각 병원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환자정보의 보호가 뒷전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시립병원 PACS 구축내역〉

병 원	구축일	비고	병 원	구축일	비고
서울의료원	2011.03	인피니트헬스케어	동부병원	2008.12	인피니트헬스케어
보라매병원	2008.05	인피니트헬스케어	북부병원	2009.10	테크하임
서남병원	2011.05	인피니트헬스케어	서울대병원	2014.03	인피니트헬스케어
서북병원	2012.12	테크하임	이대목동병원	2012.12	인피니트헬스케어

- 보라매병원의 PACS 구축사업에의 예산편성은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 대응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 2015년 결산검사에서 서북병원이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지적당한 바 있음. 아래는 2015년의 결산검토보고서 중 일부임.
- 서북병원은 추경예산을 집행한 후 잔액으로 서북병원에 필요한 의료 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예산을 잘 집행한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으나 서북병원의 경우 우수한 사례이기 보다는 방만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필요.
- 서북병원은 MERS관련 추경 당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미생물 배양기 포함 23종의 세부품목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시한바 있음. 이를 토대로 총 8억 5천만원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음. 그러나 추경예산을 위한 물품별 예산액 추계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였음.

- 다음의 표는 서북병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임. 먼저 추경예산은 서북병원이 추경의 세부내역으로 제시한 예산액임. 다음으로 품의비는 서북병원에서 물품구매를 위해 책정한 금액이며 (추경예산)-(품의비)의 경우 추경예산에서 품의비를 뺀 금액임. 낙찰차액은 품의비와 실집행액의 차이를 의미하며 추경/품의비는 품의비와 추경예산의 비율로 100%에 가까울수록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할 수 있음.

〈서북병원 201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자료〉

연번	품목명	추경예산	품의비	(추경예산)- (품의비)	낙찰차액	실집행액	(추경)- (실집행비)	추경/ 품의비
1	미생물배양기,150L ¹⁴⁾	8,000,000	1,510,000	6,490,000	-	1,510,000	6,490,000	529.8%
2	미생물배양기,250L	10,000,000	2,894,740	7,105,260	-	2,894,740	7,105,260	345.5%
3	이산화탄소배양기	15,000,000	6,315,800	8,684,200	315,800	6,000,000	9,000,000	237.5%
4	정맥채혈스캐너	13,000,000	9,900,000	3,100,000	-	9,900,000	3,100,000	131.3%
5	공기살균기	5,400,000	3,800,000	1,600,000	200,000	3,600,000	1,800,000	142.1%
6	전동식호흡장치(PAPRSET)	36,000,000	21,172,800	14,827,200	-	21,172,800	14,827,200	170.0%
7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¹⁵⁾	480,000,000	292,500,000	187,500,000	2,500,000	290,000,000	190,000,000	164.1%
8	전자동면역분석기	90,000,000	58,300,000	31,700,000	-	58,300,000	31,700,000	154.4%
	계	657,400,000	396,393,340	261,006,660	3,015,800	393,377,540	264,022,460	234.3% (평균)

- 예산의 과학적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14) 서북병원에서 밝히는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외산 물품의 구매를 고려하다가 국산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차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라고 함.

15) (상동)

와 공급상황에 근거한 최적의 예산을 산출하려는 노력보다 정보비대칭에 근거한 과도한 여유예산의 편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의회의 예산 승인 이후 적법한 예산의 집행만 이루어진다면 외형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보이게 됨. 이러한 현상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증대된 것에 비롯하는데 형식에 의거한 집행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약해졌으나 과도한 예산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 있는 집행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짐.
- 책임성 있는 예산의 집행이란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집행과정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예산을 과대추계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사이의 정보비대칭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음. 앞으로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상세한 추계 및 산출근거를 집행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2015년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됨.

9)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 거버넌스 확장 실패

-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를 제고와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와 보건소, 민간의원 간 거버넌스를 이용 환자의 등록 및 관리를 통해 건강관리행태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임.
- 2017년 예산은 총 4억 3천 4백만원이며, 2016년에 비하여 5천 82만원 증가함.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1천 1백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운영비가 1천 9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5천9백만원 증가하였음. 전체 예산은 13% 증가한 액수임.

〈2017년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예산(안)〉

구 분	2015년 예산액	2016예산액 (A)	2017예산(안) (B)	증감 (B-A)	(B-A)*100/A
					(x-) 13
계	(x-) 299,000	(x-) 383,176	(x-) 434,000	(x-) 50,824	(x-) 13
사무관리비	(x-) 9,000	(x-) 9,000	(x-) 20,000	(x-) 11,000	(x-) 122
공공운영비	(x-) 59,000	(x-) 93,176	(x-) 73,304	(x-) △19,872	(x-) △2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231,000	(x-) 281,000	(x-) 340,696	(x-) 59,696	(x-) 21

- 동 사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높은 평으로 나타났으며, 등록환자의 지속치료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등 사업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고혈압의 경우 지속치료율이 67.8%, 당뇨의 경우 65% 로 각각 서울시 평균인 59.6%, 57.8% 보다 높게 나타남.
 - 참여자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84점을 기록하였으며 참여자가 타인에게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58.9%로 나타남.

- 그러나 동 사업은 정부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과 추진 근거나 서비스의 내용이 중복적으로 나타남.

- 정부사업과 차이점은 정부사업은 30세 이상의 연령기준이 있으나 동 사업은 그러한 기준이 없는 정도의 차이로 나타남.
 - 다만,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30세 이전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상태로 해당 차이는 큰 의미가 없음.
 - 예산비율은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의 경우 시비 100%, 정부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경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매칭 비율임.
- 또한,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함. 현재 참여중인 자치구는 용산, 광진, 성북, 강북, 도봉, 구로, 관악, 서초, 강동의 9개 자치구에 불과하며, 사업이 2013년 시작했을 때 7개 자치구가 참여했었으나 2016년 현재 9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등 사업대상 시민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의원수는 84개소에서 155개소로 증가하였고, 등록환자수는 1,202명에서 11,040 명으로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이루었음.
 -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참여 자치구의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의원 등 1,253개소의 1차의료기관 중 155개소만 참여하여 의원 참여율은 12.4%에 불과함.
 - 또한, 참여의원 중 46%가 참여만 하고 등록환자가 없거나 10명 이하로 나타나 1차 의료기관의 적절한 배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여 자치구수가 확대된다면 추후 예산에 부담이 될 정도로 시민참여율이 높고 서비스 수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2017년의 사업비중 많은 양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개선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음. 실제

건강포인트 상환금액은 1억원이 채 안됨.

-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과다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7년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세부산출내역〉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디자인시안 개발 15,000,000	15,000천원
	평가및 워크숍 5,000,000	5,000천원
공공운영비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73,304,000원	73,304천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운영 (교육, 리콜, 리마인더 등) 27,000,000*9개구	243,000천원
	건강포인트 상환 92,746,000	92,746천원
	전산프로그램 설치 110,000원*5개소*9개구	4,950천원

- 동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의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사업의 내실이 성장하거나 확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집행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3.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시민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운영 중이며, 동 기금의 2017년 기금운용계획은 109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7,800만원이 감액(△13.3%)됨.
- 감액의 주된 이유는, 민간융자금 회수(10억원) 및 예치금 회수(2억 9천8백만원)로 융자성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공공예금이자(2천만원)와 예탁금 이자수입(3억 5천1백만원) 등 금융이자가 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기금운용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비고
계	12,580	10,902	△1,678	
이자수입	190	161	△29	금융이자 감소
공공예금이자	170	150	△20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20	11	△9	
기타수입	1,550	1,550	0	
과징금	1,500	1,500	0	
시도비반환금	50	50	0	
융자금 원금 수입	9,439	8,141	△1,298	원금 감소
민간융자금 회수	2,500	1,500	△1,000	
예치금 회수	6,939	6,641	△298	
예탁금 및 예수금	1,401	1,050	△351	금융이자 감소
예탁금 이자수입	1,401	1,050	△351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1조제1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에 의해 그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 이에 따른 `17년 목적사업은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 37억 5,68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2억 4,973만원이 감액($\Delta 37.5\%$)되었음.
 - 예치금, 예탁금 및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비목적사업은 `17년에는 71억 4,523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5억 7,136만원 증가(8.7%)한 것임.
- ‘17년 목적사업업과 관련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식품위생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이 실적부채를 이유로 `16년도 20억 원에서 `17년에는 5억원으로 15억원($\Delta 75\%$)이 감액되었음.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사업(5,610만원)이 폐지되는 등 식품안전관리사업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총 3억 5,887만원 줄어들었으며, 이에 반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1억 2,110만원이 증액되었음.
- 또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이 `16년도까지는 목적사업으로 분류되던 것이 `17년부터는 예산의 성격에 맞게 비목적사업으로 이관되었음.

〈기금운용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비고
계	12,580,499	10,902,120	△1,678,379	
소계(목적사업)	6,006,626	3,756,892	△2,249,734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2,000,000	500,000	△1,500,000	
식품위생업자 민간용자지원	2,000,000	500,000	△1,500,000	계속
교육홍보사업	659,460	647,460	△12,0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운영	73,460	73,460	0	계속
식품접객영업자등 위생 교육비 지원	586,000	574,000	△12,000	계속
식중독예방사업	155,000	175,000	20,000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55,000	175,000	20,000	계속
음식문화개선사업	1,483,014	1,604,116	121,102	
음식문화개선	790,000	810,000	20,000	계속
덜 짜고 덜 달게 실천배움터 운영	160,000	210,000	50,000	계속
서울시민 나트륨·당 섭취 저감화 환경조성	533,014	584,116	51,102	계속
식품안전관리사업	1,158,152	799,316	△358,836	
식품안전정보(FSI)홈페이지 운영및유지보수	87,928	101,495	13,567	계속
식품안전통합인증제 운영	264,700	25,800	△238,900	계속
식품안전 전문교육	44,600	44,600	0	계속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314,700	314,700	0	계속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0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체계구축	208,552	173,388	△35,164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	146,572	104,330	△42,239	계속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보급	56,100	0	△56,100	폐지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비고
	GMO식품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	10,400	10,400	0	계속
조사연구사업		551,000	31,000	△520,000	
	자치구 식품안전 및 식생활 개선 종합평가	551,000	31,000	△520,000	계속
소계(비목적사업)		100,000	20,000	△80,000	
보전지출		6,468,873	7,120,228	721,355	
	예치금	6,368,873	7,090,228	721,355	
	반환금 기타	100,000	30,000	△70,000	
여유자금 예탁금		0	0	0	
	예탁금	0	0	0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0	
	기본경비(사무관리비)	5,000	5,000	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00,000	20,000	△80,00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00,000	20,000	△80,000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짐.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 '17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교육홍보사업 2건, 식중독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3건, 식품안전관리사업 8건, 조사연구 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 37억 5,68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사업

-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용자지원사업”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나 영업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용자 지원을 하는 동 기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 '17년 예산액은 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억원이 감소(△75.0%)하였음.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사업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6예산(A)	2017예산(안)(B)	증감(B-A)	비고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000	500,000	△1,500,000	
민간융자금	2,000,000	500,000	△1,500,000	계속

- 동 사업의 '17년 예산이 75%나 감액된 이유는 사업집행의 저조함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16.10.31일 기준 사업집행률은 8.3%로 1억 6,5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13년부터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액 및 집행율이 매해 1/2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음.

〈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

연도	최종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2013	4,000,000	0	3,000,000	2,024,000	976,000	67.5%
2014	3,000,000	0	3,000,000	818,000	2,182,000	27.3%
2015	3,000,000	-25,000	2,975,000	330,000	2,645,000	11.1%
2016.10월말	2,000,000		2,000,000	165,000	1,835,000	8.3%

- 민간융자지원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원인은 우선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지원 대상인 영세자영업자들이 시설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

며,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대다수가 자기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전세나 임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설비투자에 대한 기대이익이 없어 융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음.

- 현재의 저금리 시대에 딱히 민간융자지원 사업의 이자율이 여타 융자 상품과 비교하여 별다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융자금을 시설 개보수 자금 등 정해진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융자금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금고(우리은행)에서 담보물 설정 등에 대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시설 개보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융자금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등 융자금 지원 대상 기준 선정 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함.
- 동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융자조건이나 대상자 확대, 홍보활동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융자금이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융자관련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시금고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사업 내용이나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민간융자지원 사업을 포함한 기금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